

---

제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6년10월1일(단기4289년)(월) 상오

---

식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
4. 인사
5. 만세삼창
6. 폐회

---

○시정과장 이성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3회임시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배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배례와 애국가봉창이 있음)

다음 의장님의 식사가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3회임시회의를 소집한데 대하여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는바와같이 유인물로 통고돼서 오늘 47인 전원이 다 참석이 되셨습니다. 에……여기에 대하여 임시회의가 있었고 창졸간에 줄지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데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긴급히 할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만은 우리 잘아시는 바와같이 자치법 22조에 뚜렷이 나타난것이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의원 3분지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때는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긴급을 요한다고 할때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하지않고 소집할수 있는것이 2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일시차입건에 대한얘기…… 그 문면으로 봐서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들이면 면담으로 하지않고 며칠동안에 제가 치통으로 앓고있는 동안에 전화로 연락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유인물에 의해서 볼 것같으면 여러가지 계획성없다는 것을 얘기 안할수 없고 다소간 얘기가 있었으나 일단 말로 승인한다고 했으니 다시 취소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시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바라건데 의원여러분께서는 모처럼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는 이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게되는데 잘 심사숙고하셔서 여기에 시로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런 소집을 행한것이니 만큼 사정을 살펴서 우리는 일방적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 대하여 여기에 협조하는 정신 또 시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대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할 말씀 많지만 간단히 이말씀으로 식사에 대신해서 오늘 개최하는데 간단한 말씀을 들인것이 올시다.

○시정과장 이성우; 다음 시장님의 인사에…… 시장님께서 오늘아침 삼군기념행사가 있기때문에 거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부시장님께서 대독을 해들이겠습니다

니다.

(부시장께서 시장인사말씀 대독이있었음)

○시정과장 이성우; 다음 만세삼창 부의장님께서 지금 UN가  
입추진위원회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선창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상흡위원(운영위원장)선창으로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의  
회만세삼창이 있음)

이상으로 개회식을 끝맺겠습니다.

(11시 폐식)

---